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살펴 본 중재 절차

김 종 배

(전 제민일보 상무이사)

I. 머릿말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보도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의 여론을 구성원 전체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아가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내용은 공익적이어야 하고 진실해야 하는 데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같은 언론의 기능으로 볼 때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국가 등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통제되거나 간섭돼서도 안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 허가나 검열은 금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시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함께 그 책임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태동시킨 정부가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신군부는 당시 사전 검열을 통해 언론보도를 부당히 간섭하고 통제했음은 물론이며 각 언론사에 내려보낸 ‘보도지침’이라는 문서를 통해 기사의 단수(段數)와 내용까지 결정하고 보도하도록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태동했다. 그후 언론기본법은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탄생 동기에 대해 많은 지적이 일자 폐지됐으나,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반론권 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물법)과 방송법에 일부 흡수됨으로써 명맥을 이어왔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언론 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제주지역의 경우만 해도 1981년 일간 신문 1곳과 방송 2곳, 통신 1곳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은 일간신문 4곳, 방송국 5곳, 통신 2곳, 인터넷신문 2곳 등으로 늘었다. 언론매체의 숫적 증가, 언론수단의 다양화, 인터넷매체의 등장, 정보제공수단의 변화 등으로 대변되는 언론환경은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제도를 가지고는 달라진 언론환경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됐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에 15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중재부의 경우는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문을 열었다.

II. 언론중재법 제정의 의미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언론분쟁 해결기관으로서 또는 언론중재와 반론권 등의 새로운 개념을 우리 사회에 도입한 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수요는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와 분쟁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피해나 분쟁의 심각성도 더 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가 하면 독자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변화는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효과가 어떤 것보다도 크며, 회복하기가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책임에 대한 요구는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으며, 언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월 1일에 제정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정간물법과 비교해서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